

5강 일제의 수탈과 강제동원, 그리고 해방 당시의 경제 현실

추상적 제국주의상像을 넘어서



목차

1. 수탈의 천국, 식민지 조선
2. 일제의 조선인 강제동원

1. 수탈의 천국, 식민지 조선

1. 수탈의 천국, 식민지 조선

- 목차 -

- 1) 수탈을 위한 펌프질
- 2) 전쟁을 위한 물자수탈
- 3) 조선 유입 자금은 어디로?
- 4) 조선총독부 재정은 어디로?
- 5) 자금유출과 식민지금융기구
- 6) 살인적 물가급등
- 7) 해방 이후에도 계속된 자금유출

1) 수탈을 위한 펌프질

- 일제하 경제 인식, 수탈론-개발론?
 - 동전의 양면일 뿐!
 - 주권국가는?
 - 장기적 ‘펌프질’을 위한 ‘물(자금)’을 부은 것
- 일제하 수탈의 분류
 - 1)물자수탈: 문화재·지하자원·농산물·금속류
 - 2)자금수탈: 재정·금융기구
 - 3)인력수탈: 강제동원

1장에서 지금 다룰 것!

2)전쟁을 위한 물자수탈

- 한국 정부, 『대일배상청구조서』(1949)
 - 중일전쟁기부터 한국의 손해액: 131억 엔
- 공출: 식량, 유기鑛器, 소, 임산물 등 80여 종
 - 미곡 생산비-공출매수가격 차액: 1억 8천만 엔
+다른 곡물 차액+강제저축+살인적 인플레이 등
→엄청난 액수!
 - 특히 광산물
 - 일제강점기의 73%가 전시기에 생산
 - 1937~43년 금생산량(6억여 엔) = 보충금의 10배!

3) 조선 유입 자금은 어디로?

- 유입 경로
 - 조선총독부 재정, 회사, 개인, 대장성 예금부
 - 금융기관 차입금 제외: 70~80억여 엔
- ‘유출’이란?
 - 단지 ‘국경’ 단위로만 생각하면 안 됨!
 - 군사비, 공채비 등 일본으로 넘어간 부분만 생각해도 안 됨!
 - 식민정책·전쟁수행에 관련된 ‘용도’도 함께 봐야!
 - 예: 식민통치비(일본인 관리 봉급), 산업관계비(군사비 성격), 교육비(일본인이 주요 수혜층)

4) 조선총독부 재정은 어디로?

- 조선총독부 세입: 조세, 관업수입, 공채, 보충금
 - 조세: 비중은 낮으나 총독부가 조울 가능!
 - 비중: 43%(1910) 이후 최고 38%(1918), 최저 21%(1939)
 - 이 중 81%가 공채비·군사비·관리봉급(경직성 지출)
 - 보충금: 일본에서 매년 거의 고정액으로 들어온 자금
 - 대부분 일본인 관리 가봉加俸으로 사용
 - 당대 조선인들이 보충금 폐지하라고까지 주장!
 - 공채: 군사적 목적인 철도·도로·항만 건설에 충당
 - 일본 대장성이 담당, 공채 이자율 일본보다 높음
 - 관업수입: 적자→조세부담!

4) 조선총독부 재정은 어디로?

- 조선총독부 세출 (1)

- 유입: +27억 2,800만 엔
- 유출(일본에 직접 유출): -18억 1,400만 엔
- 합계: 약 9억 엔→그럼 어디에 쓰였을까?
 - 세출 항목: 식민통치비, 관영사업비, 산업관계비, 공채비, 군사비, 사회사업비, 교육문화비
 - 대부분 군수조달에 충당(특히 30년대 중반 이후)

4) 조선총독부 재정은 어디로?

- 조선총독부 세출 (2)
 - 식민통치비(~43년)
 - 21억여 엔 투여, 그 중 13억여 엔이 일본인에 지출
 - 패전시 38도 이남 일본인 관리에 퇴직금, 9월 봉급 줌
 - 관영사업비
 - 세출의 절반 차지, 철도사업비, 전매비, 체신비 등
 - 철도사업이익은 공채비를 상환하고도 남음!
 - 산업관계비: 군사적 성격
 - 세출 비중 16.9%, 지출액 약 17억 엔
 - 교육문화비: 대부분 일본인이 수혜!

5) 자금유출과 식민지금융기구

- 금융기구를 통한 자금유입·유출
 - 회사채, 차입금 등을 통한 유입·유출
 - 조선은행, 식산은행, 금융조합연합회, 동척 발행
 - 1905~45년, 단기차입금 포함 153억 엔 유입
 - 유출액: 211억 엔, 유출 초과액: 약 57억 6천만 엔
 - 차입금: 단기차익을 노린 것
 - 대부분 조선은행(95.2%)를 통한 것
 - 조선은행 주요 활동: 만주 → 조선 유통 부분은 제한적
 - 실질적인 것은 극히 일부인 대장성 예금부 자금!
 - 이것도 결국 조선에서 거두어 간 자금!

5) 자금유출과 식민지금융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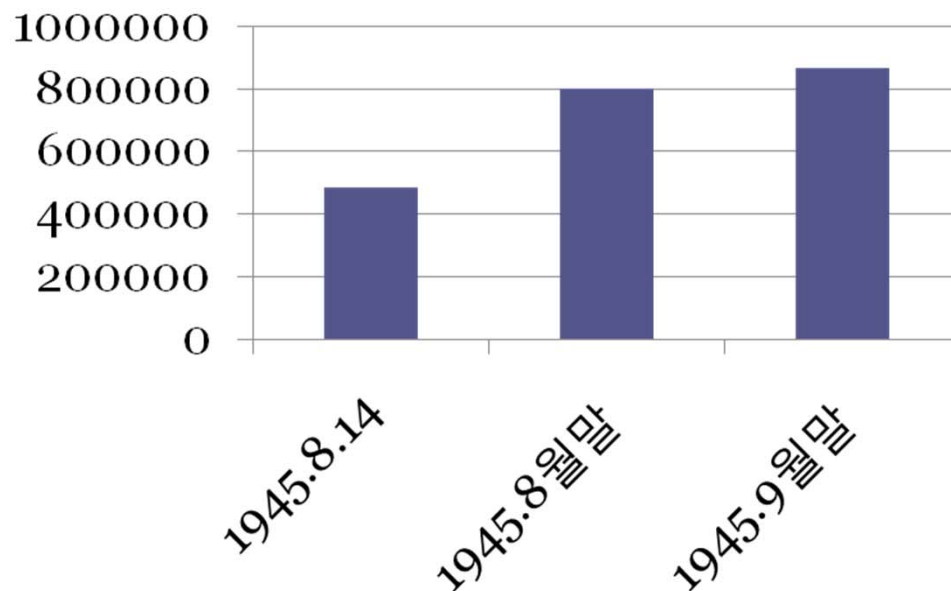
- 강제저축: 전쟁기의 ‘자급자족’
 - 1938년 이후 금융기구 유입액이 평소 39% 정도
 - 1936~45년, 80~90억 엔 정도: 조세의 3~4배!
 - 조선인들, 초근목피!
 - 용도: 일본 국공채 매입, 전쟁관련 업종 대출자금
(해방 후 조선은행 조사부는 조선 금융기관이 보유한 일본국채액만이라도 일본으로부터 빨리 상환받아야 한다고 미군정에 촉구함)

6) 살인적 물가급등

- 조선은행권 남발
 - 일본 국채를 발행보증준비로 함!
 - 1940년대 조선은행권 발행보증준비의 대부분!
 - 발행고: 1936년 기준 1945년까지 23배(매년 2.6배)
- 극심한 인플레이션: 조선인에 대한 피해 전가
 - 생필품 가격 급등
 - 고춧가루: 최고. 중일전쟁 이후 229배(매년 25.4배)
 - 연탄: 최저. 18.4배
 - 암거래 기준, 일본은 2~3배 급등, 조선은 6~10배 급등

7) 해방 이후에도 계속된 자금유출

발행고(단위: 만 엔)



■ 발행고

- 계속된 자금 유출
 - 45.10.13까지 조선은행, 일본인 장악!
 - 조선은행권, 계속 남발!

7) 해방 이후에도 계속된 자금유출

- 조선은행권 남발로 인한 자금유출
 - 1) 각 금융기관 보유 일본계 통화액(15억)
 - 2) 각종 미수금(56억)
 - 3) 일본인 예금인출·청산자금 송금($22+14=36$ 억)
 - 4) 조선인, 일본인 생명보험회사에 보험료(4억)
 - 5) 예금부로 흡수된 자금(우편저금, 간이생명보험, 우편연금 등, 융통자금보다 3억 정도 초과)
- * 합계: 대략 100억 엔이 훨씬 넘음!

1. 수탈의 천국, 식민지 조선

- 결론

- 1) 수탈-개발은 동전의 양면!
- 2) 재정 수입은 대부분 일본인과 일본 제국주의를 위해 쓰였음!
- 3) 금융기구를 통한 자금 유입도 대부분 단기차입이고, 전쟁기에는 강제저축이 대부분을 차지함!
- 4) 해방 이후 조선은행권 남발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조선인에게 엄청난 타격
- 5) 결국 해방 후 한반도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전락

2. 일제의 조선인 강제동원

그 아픔의 역사



2. 일제의 조선인 강제동원

- 목차 -

- 1) 강제동원의 규모
- 2) 일본 국가와 재벌의 유착
- 3) 폭력성과 강제성
- 4) 탈주하는 노동자들
- 5) 임금 탈취
- 6) 학살·유기의 현장

1) 강제동원의 규모

- 일본의 근대: 침략적
 - 1871 류큐 침략부터 1945 패전까지
 - 특히 강제동원: 반인륜적!
- 한 한국 학자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
 - “강제동원도 자본주의의 엄혹한 경험”



→ 사람 생명은? 임금은?

1) 강제동원의 규모

- 강제동원(1939~45)

- 형태 구분

- 1) 노동력 강제동원:모집·관 알선·징용·근로보국대
 - 2) 병력동원: 자원병·학도병·징병
 - 3) 군 관련 동원: 군속·군부軍夫·일본군 ‘위안부’

- 지역별: 조선, 일본, 사할린, 만주, 중국, 남방

- 숫자

- 한반도 내 노동자 연인원 600만 명 이상
 - 일본 및 전쟁지역 동원 노동자 139만, 군인·군속 36만
 - 일본 동원 노동자 최소 70만, ‘성노예(종군위안부)’ 적어도 10만여 명

2) 일본 국가와 재벌의 유착

- 조선인 강제동원=일본 국가+기업+총독부
 - 중일전쟁(1937) 계기로 징병 실시
 - 일본 탄광주들이 조선인 노동자 이입을 부탁
- 노동력 강제동원의 시작(1939)
 - ‘중앙협화회(39.6)’
 - ‘조선인 노무자 내지이주에 관한 건’ 발포(39.9)
- 기업통합체 ‘통제회’(1941)
 - 조선인 노동자를 쓰려는 일본 기업 간의 조정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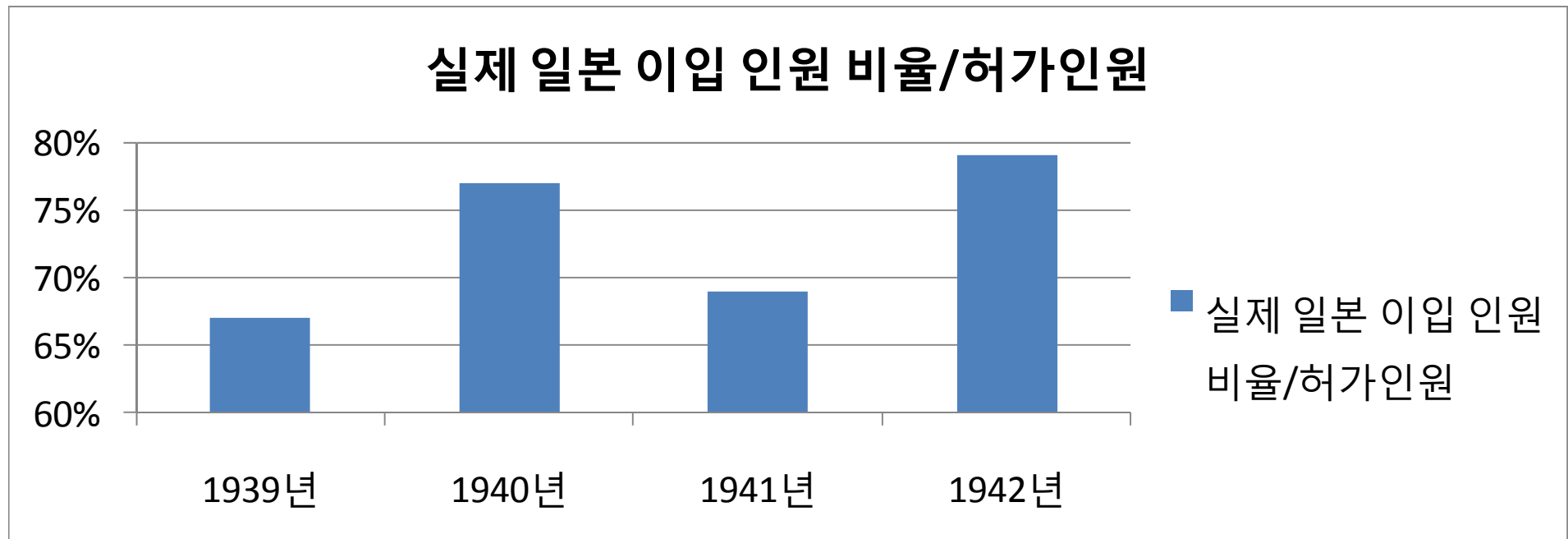
3) 폭력성과 강제성

- 강제동원(‘모집’)의 형태
 - 일본 기업이 후생성의 허가를 받아 대리 모집
 - 그러나 관官 ‘알선’은 필수!
 - 강제동원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음
 - 배경
 - 조선인의 경제 파탄과 돈 벌 수 있다는 거짓 선전
 - 관-경찰·면직원의 위압적 ‘권유’
 - ‘황민화’ 정책
 - 내용: 폭력성+강제성 수반

3) 폭력성과 강제성

- ‘조선인노동자모집요강’에서 강조된 내용
 - 1) 시국산업 종사로 국가에 공헌한다는 자각
 - 2) 도항 후 훈련소 훈련
 - 3) 직장이동 금지
 - 4) 협화사업단체 가입 후 회원증 소지
 - 5) 주소변경시 5일 내 협화사업단체에 제출
 - 6) 일본식 생활에 순응하고 일본인이 혐오하는 행위 금지
 - 7) 일본어 사용
 - 8) 협화사업단체 간부, 경찰관, 직업소개소원에 복종

3) 폭력성과 강제성



- 조선인들의 저항으로 일시 감소
- 1942년 이후 강제력이 더욱 커져서, ‘관 알선’ 방식으로 급증

3) 폭력성과 강제성

- ‘관 알선’
 - 지방관청, 총독부가 할당인원을 모아 사업주에게 인도,
 - ‘국민징용령’ 조선 적용(44.9)
 - 일본 동원 조선인에게는 이전부터 징용령 적용
- ‘징용’
 - 조선총독부-도지사가 노동자를 모아 항구로 인솔하여 사업주에게 인계하는 방식
 - 저항 때문에 송출성적이 20~30%
 - 인원이 1943~44년 2.2배로 급증

4) 탈주하는 노동자들

- ‘중앙협화회’(1939.6)
 - 일본에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이 가입해야 하는 단체
 - 조선인에 ‘황민화’ 교육, 지정기업에 ‘정착’시킴
- 조선인에 대한 혹사
 - 군대식 훈련, 민족차별과 폭력, 혹사, 위험한 일
 - 탄광에서 일하는 조선인 92%가 갯내 배치(1943.4)
 - 일본어 사용 강제, 폭력, 살인적 노동강도
 - 1년 노동일 311일, 1% 전후의 사망률
 - 계약기간 2년, 그러나 ‘갱신’ 강요로 계속 강제노동

4) 탈주하는 노동자들

- 탈주의 속출

- 미불임금 받는 것을 포기하고 탈주!
- 탈주율 18.7%(1940년 말)→33.3%(1943년)
- ‘모집’ 동원자 탈주율 40.0%(1942)→41.7%(1943)
 - 효고현兵庫縣 봉산縫山, 탈주율 89%(19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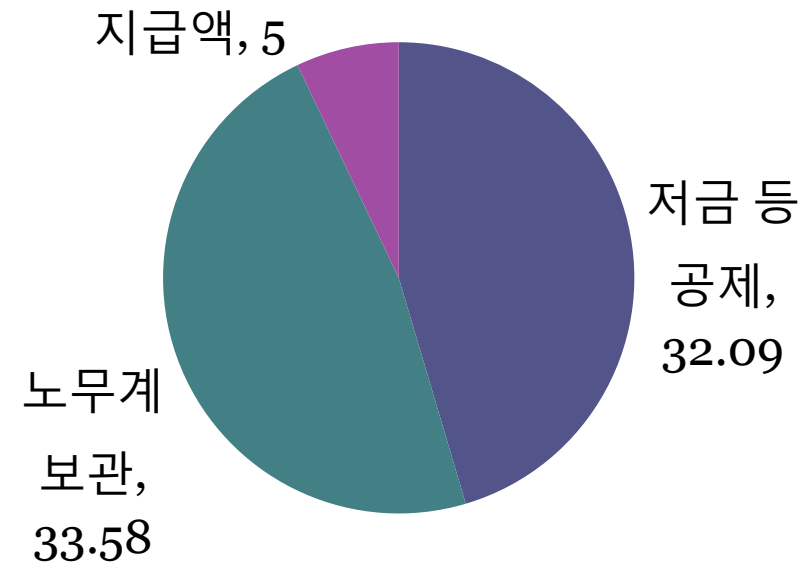
- 김경석 씨의 예

- 니혼고우칸日本鋼管에 강제연행
- 고열지역에서 2교대, 약속한 임금의 1/8(10엔) 받음
- 1943년 조선인 837명 연좌농성
- 결과: 구타, 감금, 병원 금지, 2명 살해

5) 임금탈취

- 일본 기업의 약속과 그 실제
 - 연봉 800여엔 약속: 조선에서 3% 내 고소득층 연봉
 - 즉, 지킬 수 없는 약속
 - 강제저축, ‘헌금’

↓그림: 조선인 노동자 월평균 임금(70.67엔)



5) 임금탈취

- 미불임금-예금, 일본 패전 이후 공탁
 - 여운택·신천수의 사례: 합계 약 4~500엔 공탁
 - 현재 일본 재벌(미쓰비시 등) 모두 공탁!
- 군인·군속의 사례로 본 미불임금
 - 1인당 평균 1~2천 엔 미지급
 - 36만여 명 군인·군속 미지급금 대략 3억 7천만 엔
 - 현재 가치로 수 조원 이상!

6) 학살·유기의 현장

- 강제동원의 종말: 학살·유기!
 - 사할린·재일동포에 대한 책임!
 - 정글에 버려지거나 군사기밀을 안다고 죽음!
- 해방 후에도 이어진 문제들(1) 학살
 - 우키시마마루 폭파사건(1945.8.24)
 - 승선자 7,500명 중 5천여 명 몰살
 - 치시마千島열도 5천 명, 평양 미림비행장 800명 학살
 - 류큐에서 1,700명 배에 갇혀 있다가 폭사

6) 학살·유기의 현장

- 해방 후에도 이어진 문제들 (2) 미귀환
 - 일본
 - 재일조선인 236만 명 중 170~180만 명 귀환(46.3)
 - 연합군 조사 결과 64만 명도 대부분이 귀국 희망!
 - 러시아: 사할린 15만 명 중 약 5만 명 잔류
 - 남게 된 이유
 - 핵심: 전후 일본의 무책임한 유기, 소련의 억류정책
 - 한반도 정치의 불안
 - 여비제한(1천 엔)
 - 미불임금을 기다리거나 귀국선을 못 탐

2. 일제의 조선인 강제동원

- 결론

- 1) 강제동원은 일본 국가-기업의 공모 아래 조선총독부가 총대를 메고 저지른 일!
- 2) 조선인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한 측면도 존재!
- 3) 폭력성과 강제성이 여실히 드러남!
- 4) 학살·무책임한 유기 등으로 현재까지도 재일동포·재러동포 등의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음!

• 참고문헌

류승렬 외 지음, 『일제 식민지배와 강제동원』, 경인문화사, 2010.

문영주, 『일제하 도시금융조합의 운영체제와 금융활동(1918~1945)』,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논문, 2004.

박경식, 『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 未來社, 1965.

박경식 · 山田昭次 감수, 양태호 편 『조선인강제연행논문집성』, 明石書店, 1993.

박경식 편, 『조선문제자료총서』제2권, 아시아문제연구소, 1981.

외무부 정무국, 『대일배상요구조서』, 1954.

이경란, 『일제하 금융조합 연구』, 혜안, 2002.

재일조선인운동사연구회편, 『재일조선인사연구』No.28, 綠陰書房, 1998.

전강수, 『식민지 조선의 미국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 경제학과 박사논문, 1993.

전후보상문제연구회편, 『전후보상문제자료집』 제2집, 전후보상문제연구회, 1991.

정병욱, 「식민지 금융기구를 통한 자금유출입과 성격」, 일본의 본질을 다시 묻는다』, 한길사, 1997.

정진성, 『日本軍の性奴隷制』, 論創社, 2008.

정태현, 「식민지 재정기구를 통한 세출의 용도와 성격」, 일본의 본질을 다시 묻는다』, 한길사, 1997.

정태현, 「일제하 자금유출 구조와 조세정책」, 『역사와 현실』18, 1995.

정태현, 『일제의 경제정책과 조선사회』, 역사비평사, 1996.

정태현, 『문답으로 읽는 20세기 한국경제사』, 역사비평사, 2010.

정태현·기광서, 「일제의 반인륜적 조선인 강제노무동원과 임금 탈취」, 『역사와 현실』50, 2003.

정혜경, 『일제말기 조선인 강제연행 강제노동 1, 일본편』, 선인, 2006.

조선은행 조사부, 『조선경제연보』, 조선은행 조사부, 1948.

朝鮮史料編纂會, 『財政金融政策から見た朝鮮統治とその終局』, 友邦協會, 1962.

大藏省管理局, 『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歴史的調査』通卷第八冊 朝鮮編 第七分冊(제16장), 高麗書籍, 1985, 124쪽.

水田直昌 監修, 『總督府時代の財政』, 友邦協會, 1975.

小澤有作 편, 『近代民衆の記録 10 在日朝鮮人』, 新人物往來社, 1978.

田中直樹, 「第二次大戰前夜の炭鑛における朝鮮人勞働者-石炭聯合會資料を中心にして-」, 『朝鮮研究』72, 1968.

日本鑛山協會資料 제78호, 『半島人勞務者に關する調査報告』, 1940.12.

金慶海 외, 『鑛山と朝鮮人強制連行』, 明石書店, 1987, 10-12쪽.

古庄正 編, 『強制連行の企業責任』, 創史社, 1993.

金贊汀 편자, 『證言 朝鮮人 強制連行』, 新人物往來社, 1975.

『特高月報』1940년 1월.

「供託金明細書」, 1947.8.

山本直好, 「人權侵害の賃金未拂い」, 『日本企業の戦争責任』, 創史社, 2000.

古庄正, 「連行朝鮮人未拂金供託報告書」, 駒沢大學經濟學會, 『經濟學論集』 제23권 1호, 1991.

<오마이뉴스> 2009.8.27.

제17회 외교기록공개일반안건, 『태평양전쟁 종결에 따른 옛 일본 국적인의 보호인양 관계, 조선인 관계, 유골송환 관계』